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46回平昌郡議會

第 1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6年 11月 25日(月) 14時05分

場 所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場

## 監査日程 (第1次 監査活動)

1. 監査實施宣言(委員長)
2. 機關長人事 및 幹部紹介
3. 所管別審査

- 가. 企劃監査室 所管 \_\_\_\_\_ 5 面
- 나. 民願奉仕室 所管 \_\_\_\_\_ 37 面

(14時05分 監査實施)

○ 委員長 禹康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2대의회로서는

두번째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 여러분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줌으로써 상호 공감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앞으로의 군정업무 수행에 널리 반영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서로 이해와 타협으로 원만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한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여러날 동안 성의있게 작성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용강 부군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朴容康 : 부군수 박용강입니다.

존경하는 김낙운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우강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년에는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농산물가격의 하락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무장공비 침투 피해지역 지원대책과 대관령 관광특구 확대 변경 건의안,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 공사와 관련한 주민 건의사항 등 군민의 현안사항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촉구화 하는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펴 오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등 금년 한해동안 추진동안 군정전반에 대하여 다시한번 점검하시고 '97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확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 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집행기관이 1년간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평가받는 기간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에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 되었거나 추진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올바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

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함과 아울러 향후 군정추진의 교훈으로 삼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작성 제출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요구하여 주신다면 힘껏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조언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국 농촌지도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인사 )

다음은 김영주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인사 )

다음은 이영덕 민원봉사실장 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인사 )

다음은 강경석 내무과장입니다.

( 내무과장 인사 )

다음은 신대송 재무과장입니다.

( 재무과장 인사 )

다음은 송재명 지역개발과장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인사 )

다음은 권혁승 관광문화과장입니다.

( 관광문화과장 인사 )

다음은 남대현 지적과장입니다.

( 지적과장 인사 )

다음은 박정자 복지과장입니다.

( 복지과장 인사 )

다음은 조규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인사 )

다음은 김창길 상공과장입니다.

( 상공과장 인사 )

다음은 정의수 축산과장입니다.

( 축산과장 인사 )

다음은 손영택 산림과장입니다.

( 산림과장 인사 )

다음은 안원수 건설과장입니다.

( 건설과장 인사 )

다음은 김학근 도시과장입니다.

( 도시과장 인사 )

다음은 장인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사 )

다음은 손동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인사 )

다음은 이우형 사회지도과장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인사 )

다음은 한용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인사 )

오늘 불참한 농정과장 신영선은 모친상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委員長 禹康鎬 : 박용장 부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평창군의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로 증인선서가 있는 다음 감사대상 사무처리 상황보고와 질의. 답변을 한후 종료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소

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4時09分 監事中止)

(14時14分 監事繼續)

○ 委員長 禹康鎬 :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김 영 주

(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禹康鎬 : 다음은 감사대상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입니다.

기획감사실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장현평 입니다.

( 기획계장 인사 )

예산계장 최호영 입니다.

( 예산계장 인사 )

공보계장 지형근 입니다.

( 공보계장 인사 )

감사계장 김영석 입니다.

( 감사계장 인사 )

법무등록계장 송재춘 입니다.

( 법무등록계장 인사 )

기획감사실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기획실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禹康鎬 : 위원여러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10페이지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원고 평창군, 피고 원영근,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시가지 로타리라 했을 때에 원영근으로부터 평창군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다는 내용을 보면 전체매입을 했다, 그런데 왜 4평이 남아 있느냐, 그당시에 있던 등기를 도로에 들어간 일부만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왜 안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군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당시에 왜 이렇게 했는지 왜 등기를 안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그당시에 도 읍정비를 할때에 76년도인지 77년도에 그당시 업무는 새마을과 개발계의 이용기 전 용평면장이 그업무를 다뤘습니다. 그때 토지가격을 전부를 지출하고서 4평을 등기를 못한것은 그때 분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용기 전면장이 등기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것을 지금 보면 실장님께서 잘못이 있다고 안보니까? 분쟁이 있던 없던간에 군에서 전액을 다 주고 토지를 매수했다고 하면 모든절차를 밟아서 등기를 이전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왜 토지를 매각한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분쟁이 있다는것은 토지매각 한분, 지역사람들 같이 그 사람들간에 분쟁이 서로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군하고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그래가지고 그때 실무자가 등기를 즉시 소유권을 이전했으면 되는데 그만 자투리 땅이고 그래서 업무미숙으로 등기를 못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일단은 그때 담당공무원이 여하간 동기이전을 안했다는것은 그사람의 과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와서 지금 그사람들이 수년간 토지세를 세금을 내고 그래왔는데 지금와서 군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아무런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군에서 일단 그사람 땅으로 인정을 해주던가, 아니면 돈을 다 시주고 매수를 하던가 양단간에 일론 결정이 나와하는데 지금 소송문제는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어느정도 까지 가 있습니까?

지역사람들, 숫한사람들이 증인을 서고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증인을 채택해가지고 아마 12월달에도 기일이 잡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의 문서를 보거나 그러면 땅값이 전부 지불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사람이 세금도 전부 세금을 낸것이 아니고 딱 한번만 납부를 했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한번 납부한것이 전부 연체로 되어 있는것이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사실은 우리가 세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이것은 소송을 제기해 놓았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군에서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아무리 돈을주고 샀다 한들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땅을 샀으면 동기이전을 안합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오다가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지금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것이 사실 행정상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한다고 생각 안할수 없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또 이문제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봐서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날려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집행부에서 그당시에 잘못이 있다, 뿐만아니라 과거에 보면 군에서 등기이전이라던가 이런것을 안해서 거의가 다 실패를 하고 돌아간것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로 이전이 되어서 이주를 시키고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문제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20년 가까이 된 문제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도 빨리 못하고 미숙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중에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된 예산을 1회추경에 다시 예산을 계상한다던가 1회추경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2회추경에 다시 계상을 한다던가 이러한 부분이 96년도에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업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산계상을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예산운영을 그런식으로 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삭감이 되어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계상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판매장설치 예산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산물을

( 이후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

○ 李洙現 委員 : 앞으로 수혜계층에서 보조금을 1차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할때는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그것을 판단하기 나름인데 요구서가 다 들어왔다고 다 편성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이 우리 군민에게 이익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은 삭감을 하게 됩니다

○ 李洙現 委員 : 그 부분은 말입니다  
사실상 보조금관리규칙에 맞도록 예를들  
어 보조금 몇%, 용자 몇%, 자부담 몇%,  
라는 보조금관리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긋나서는 안되는걸로 본위원회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1차  
추경에서 예를들어 의회에서 삭감을 했  
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2회추경  
에 다시 계상을 하고 말이지요.

또 의회에서 삭감했다 해서 노골적인 불  
만을 터뜨리고 이런일이 있는데,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것은 상당히 유감스럽  
고 죄송한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집행부의 어떤 선심성  
한마디로 이러한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의회에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차 아  
무런 제안설명도 없이 예산을 상정하고  
이런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제대  
로 진행을 못하는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지 책임이 의회에 있는것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앞으로 그런

예산은 의회와 충분히 협조를 해가지고  
계상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97년도에 실장님 그  
런일이 없으시겠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사전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그다음 새강원장학회 장학생선발 총인원  
이 59명이고 본군이 2명인데 대학생 41  
명, 그런데 본군에는 1명밖에 안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이것은 학교  
성적이 B학점 이상, 또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추천을 합니다. 각 읍면에 추천요  
구를 받았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 李洙現 委員 : 지금 대학생이 41명인  
데 본군에서 1명이면 상당히 적은 숫자  
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적게 선정  
이 된것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거기에 대한  
대상자를 읍면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리고  
평창장학회가 있으니깐 평창장학회에다  
그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장학금이 국립대  
학은 60만원, 사립대학은 80만원 이렇게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고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나요?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 李洙現 委員 : 혹시 대상이 되는 학생이 누락된 사항은 없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평창장학회가 80만원을 주기때문에 대개 학교장학금은 40만원, 50만원밖에 안되어서 평창장학회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은쪽으로 수혜를 받으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21쪽을 보시면 '96 주민소득지원 및 용자대상자 심의, 33가구 신청을 해가지고 6가구가 확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주민소득지원 관계는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 신청

이 들어왔어도 적합한 사업으로 아마 해당과에서 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 여섯명을 선정하는 과정이.....,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그전에는 새마을과였는데 이제는 복지과 전부다,

○ 李洙現 委員 : 복지과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섯명 선발된 내용이?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네. 새마을과에서 지역개발과로 가는것이 아니고 복지과로 갔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이경진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도. 중앙부처와 협의한 내용과 성과, 이 자료를 보면 특별교부세 지원협의 해서 군수님이 내무부를 방문 한걸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한번 갔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러면 그 뒷장에 31번 국도 4차선화는 국도관리청이니까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99 동계아시아대회 관련 사업  
내무부 스포츠관련부서 방문, 그때 내무  
부에 한번 가셨었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네.

○ 李慶鎭 委員 : 그다음 뒷장에 보면  
미날교재가설, 이때도 내무부에 군수께  
서 가신걸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송정  
교가설, 내무부 방문한걸로 이렇게 작년  
에 4번 가신걸로 되어 있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한번가서 건  
수를 그렇게 같이,

○ 李慶鎭 委員 : 그럼 한번가신겁니까?  
한번 가셔서 4가지 얘기를 하신겁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네. 그렇습니  
다. 요다음 내일 모레인가 한번 가십니  
다.

○ 李慶鎭 委員 : 한번 가셔서 네가지  
좋은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 평창읍소  
도읍가꾸기 문제는 2년전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년전에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네가지  
사항들중에서 평창읍 소도읍가꾸기하고  
우선순위로 보나 여러가지로 보나 시급

성을 따지고 봤을때 소도읍가꾸기는 상  
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차례 가셔서 네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2년씩 못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거기까지 가셨으면 한번 얘기하고 오셔  
야 하는것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그때 이제 소  
도읍가꾸기 하고 강원도에서 결정해서  
내무부에 올리는 사안이 되는데 물론 내  
무부에서 예산지원은 하더라도 그때 당  
시만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소도읍가꾸  
기에 대해서 사실 군수님이 내무부에 가  
시니까 내무부에 가셔서 말씀드릴 자료  
를 각과에서 받습니다. 받으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가시는데 그런자료를 기  
획감사실에서 만들어서 충분한 설명을  
할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는데 사  
업부서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자료를 제  
가 와서는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차로 도부터 절충을  
해야 하기때문에 도에 가실때에는 군수  
님께 자료를 각과에서 받아서 드리겠습  
니다.

○ 李慶鎭 委員 : 지금 사업부서에서 현황이라던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추진하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안해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신거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그렇지요. 왜냐하면,

○ 李慶鎭 委員 : 그렇다면 작년 95년도에 평창군이 시군사업중에 우선순위로 9번째인데 작년에 우선순위 11번째가 사업을 했거든요. 그때도 그런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셨다는 얘깁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아시다시피 봉평의 소도읍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무리를 하면서 평창읍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도나 중앙에 갈때는 도나 중앙에 건의할 자료를 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 李慶鎭 委員 : 아니 자료를 내고 안내고 보다는 제가 보기에 1년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9번째인데 11번째로 밀리고 있는 사항을 판단을 못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해서 얘기를 안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소도읍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각과에서부터 꼭 가서 얘기해서 책정시키도록 할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봉평도움이 마무리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

○ 李慶鎭 委員 : 제가 봤을때는 내무부에 가는것이 아이들 장난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씩 모처럼 가는데

1년 2년씩 못하는 사업을 가는김에 한번씩 두번씩 얘기함으로 해서 몇년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수증 받으러 가는일도 아닌데 가서 한번얘기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갔으면

2년씩 못하는 사업을 온동네 주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을 이왕 갔으면 얘기를 하고 오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평창의 도읍정비는 말입니다. 도에서 집행돼야 합니다. 내무부에서 집행하는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일단 올라간 다음에 내

무부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도에서 결정을 해서 되는것이지,

○ 李慶鎮 委員 : 지금 도시과에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는 강원도사업으로 내무부에 올라갔습니다. 도시과장한테 정확한 문서에 의해서 확인한바는 없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여러가지 문제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도에서 만약 1순위로 올라갔다면 내무부에서 당연히 책정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 李慶鎮 委員 : 위원장님! 도시과장님좀 불러서 이 문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까?

이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도에서 1번순위로 올라가는데 내무부에서 결정을 안해줄리가 없지 않습니까?

○ 李慶鎮 委員 : 내무부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 35%로 하는데,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각 시도별로 1건씩은 1순위가 됩니다.

○ 李慶鎮 委員 : 제가 되었다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도시과장한테 1년동안을 한달에 한번씩 확인했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우리쪽에서는 봉평도움이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되어서 도움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내릴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평창읍도움정비가 만약 도에서 1순위로 내무부에 올라갔다면 각 시도별로 제1순위는 당연히 결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李慶鎮 委員 : 사업을 못한것은 어쩔수 없고 내년도에 시간이 있으면 하던데 제가 집고자 하는 얘기는 내무부까지 가셨으면 2년동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을 한마디 안하셨다고 하니까 지방비 35%, 부담비율이 많이 나가는 돈인데 돈이 아까워서 안하시는것 같은 생각이 들고 상당히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 가셨으면 얘기 한마디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앞으로는 제가 알고있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갈때는 자료를 도시과로 부터 받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리고 한가지 12페이지에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용평스키장 불법농지에 관해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는데도 굳이 소송을 해서 공소권 없음의 판결을 받은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처리가 잘안된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어떻게된 이유인지, 변호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해서 공소권 없음의 판결을 받았다고 보는데 답변을 안하셨는데 어떻게된 이유인지 가능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농정과 소관입니다.

○ 李慶鎭 委員 : 농정과인데과 자체에서 소송하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과 자체에서 합니다.

○ 李慶鎭 委員 : 농정과장님 만나오실 확률이 있는데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면 안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농정과장이 제일 마지막날 일정을 변경해서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 李慶鎭 委員 : 법무계 누가 답변하시면 안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고발하는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李慶鎭 委員 : 아침에 3분발언때도 말씀드렸는데 원주 ~ 강릉간 철도개설 문제가 나와서 97년도 예산에 50억이 확정된 사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네.

○ 李慶鎭 委員 :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이라던가 군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특히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이리로 지나갈 확률이 거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군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해달라고 건설교통부나 내무부나 해당되는 부서에 방문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것이 혹시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그것은 내일

모래 내무부에 가지게 되면 그 자료를 한번 보고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냐 판단됩니다.

○ 李慶鎭 委員 :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 지방양여금의 교부금 지원내역서 그런 자료에 보면 그 중에서 하수도관정에 대한 부분은 영월이 1억 4,800만원을 교부금으로 받았고 정선이 1억 1,600만원, 평창은 2,200만원 받았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설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상하수도 취급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더 정확할것 같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委員長 禹康鎬 : 각 소관부서로 되어 있는것은 기획감사실장 답변말고 소관별로 심도있고 정확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時05分 監査中止)

(15時15分 監査繼續)

○ 委員長 禹康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이였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사람과 교체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다음사항은 도암면장 소규모 주민 편의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6년도 사업장 현지 점검을 나갔을때 도암면민들 몇분안되는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96년도에 도암면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당시에 현지에 나가서 들은

여론은 소위 도암면장 포괄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 용산1리 농로 620m정도를

확·포장 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그날 나가서 물어보니까 현재 도암면장은 대답을 시원치않게 하고 해서 질문요지는 면장 포괄사업비는 어떨때 쓸수 있는 것이냐, 현재 이 자료에 나온것을 보면 5,000만원 중에서 3,400만원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이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교체는 다섯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창담당 관사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다음 기획감사실장이, 전번에는 내무과장인데 내무과장이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되었어야 하는데 이제는 업무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감사계가 기획감사실로 오면서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으로 되고 다음에 교육계통에서 한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학무과장이 위원이 되고 그다음 행정경험이 있는 ( 이후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다음 도암면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은 예산편성 지침을 보게되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투자 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군수는 5억이고 읍면장은 5,000만원을 쓰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매년 한번씩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앞으로 법조화 되겠습니다만, 9월달에 시달 각시군까지 시달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고 도암면의 집행한것을 보면 95년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병내리 소교량 설치하고 농어촌가로등설치, 황계10리 하수도교량 보수 해가지고 4,820만원이 집행되어서 18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금년도는 4개사업이 착공이 되었는데 5,000만원중에 3,4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불용액이 4만원,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596만원 해가지고 발주가 늦어진 사항이 차항1리 갈골 도로포장 하고 유천리 하수도 뚜껑설치가 발주가 늦어져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산1리 620m 확·포장 관계는 도암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에는

( 이후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

○ 李相薰 委員 :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약 620m 정도를 첫구간이 아니고 중간부분쯤 해서 포장을 했는데 20m정도 포장한것을 군에서 내용을 모르면 어떤 사람이 한지도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인데 얘기를 바빠서 현지에 가서 적용을 해보지 않았습시다만, 황계의 여론은 면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620m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이것은 마을 안길 포장은 건설과에서 시공합니다.

○ 李相薰 委員 :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건설과에서 한것이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읍면에서 착공했다면 건설과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해가지고 했을겁니다.

○ 李相薰 委員 : 그래서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있는것은 '96년도 도암면 소규모 사업은 유인물과 똑같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사업을 건설과에서 예산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지요?

부탁을 드립니다.

(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 劉燉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운영사항중 부의안건은 월별로 심의한것이지요?

부의안건이 위원님들이 월별로 심의한 겁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과에서 나와서,

○ 劉燉文 委員 : 왜 그러는가 하면 대화산업(주) 규석광산개발 확장을 위한 균유림 사용 허가심의를 보면 96년 2월 16일 허가결정이 나왔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현지확인때 민원이 야기되어서 동료의원 전체가 다녀 왔습니다.

심의할때는 민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한테 자료가 첨부되어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대화산업 규석광산개발 확장을 위한.....,

○ 劉燉文 委員 : 규석광산이라고 해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균유지를 사용

한다고 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균유립을 사용하기 때문에.....,

○ 劉燉文 委員 : 균유립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네.

○ 劉燉文 委員 : 그렇다면 민원이 있다는 것을 심의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뒷면에 있는것이 위원 명단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각 실과소장입니다.

각과에서 산림과 소관이니까,

○ 劉燉文 委員 : 산림과장은 위원이 아닙니까? 산림과장이 그럼 민원의 대상이 되는것을 얘기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산림과 소관이니까 산림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 劉燉文 委員 : 그러니까 산림과장이 제안설명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갔더니 우선적으로 먼

지가 많이 난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우리가 가는날은 마침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폐석을 거의 붓고 쌓는과정에서 물을 잔뜩 넣으니 먼지가 안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훼손을 했으면 보존을 한다는 확장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되는데도 막해주니까 실무측에서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훼손을 했으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확장 허가가 들어오면 해줘야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현지확인을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것은 현재 위원님들이 하나도 모르고 막나가는것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산림훼손 허가를 할때 복구비를 예치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 劉燉文 委員 : 그날 우리가 현지확인 갔을때 산림과장이 같이 갔었습니다.

훼손허가를 분명히 산림과장이 설명을 안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허가가 났다는 말씀이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네.

○ 劉燉文 委員 : 위원 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명단, 이분들이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네.

○ 劉燉文 委員 : 그러면 거기 민간인이 4명이 계시는데 이런것은 군에서 위촉을 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실과소장들입니다.

○ 劉燉文 委員 : 실과 과장님들이 있는데 이것은 산림과소관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소청현황 해가지고 뒤에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것은 전달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것은 우수공무원 특별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수공무원 특별수당 해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예산심의를 했는데 집행과정을 자료로,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지금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12월달에 집행이 됩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평창군과 다른지역과 자매결연 맺은지역이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 자료에 보면 몇개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방문함으로써 인해서 사적으로 친해졌다고 해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어떠한 유사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루빨리 지금 세계화는 고사하고 옆집하고도 교류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수 있고 얻을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루빨리 우리 평창군에 보탬이 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굳이 우리뒤를 따라오는 낙후된 지역보다는 뭔가를 배울것이 있는 이런지역을 신중히 검토해서 국제교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

해 하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네. 알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자료 102쪽을 보면 소규모주민생활 편의사업, 다시말해서 포괄사업 애긴데, 4억 9,99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부분을 보면 농로포장비가 무려 2억 2,700만원입니다.

도수로, 배수로, 이것을 빼놓고 농로포장비가 2억 2,7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평창군의 마을안길 포장 비용이 6억 4,000만원이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네. 그렇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시다만, 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80%이상인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작년도에 도비보조가 끝났다고 해서 어차피 해야될 일인데,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서에 보면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또 7억원 밖에 안됩니다. 6억 4,000만원이나

7억이나 그돈이 그돈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료상에도 2억 2,700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나갔습니다.

이런것도 충분히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왜 7억원밖에 반영을 안하셨는지?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예산 가용재원이 많고 여러가지 형편상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 군수님 재량사업비도 주로 마을안길로 투자를 할것으로 생각이 되고,

○ 李洙現 委員 : 재량사업비로 추진하는것 보다도 당초에 읍면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마을안길포장사업을 추가 배려를 하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이수현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委員 :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 '96년도 풀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또 노인 의날 행사, 역전경주대회, 장애인체육대

회등 모든것이 여기에서 나왔는데 '97년도 예산서를 보면 농어업경영인체육대회만큼은 따로 계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풀보조금에서 지급하시면 될것 아닙니까? 굳이 명분을 따로 달아서 계상하실 필요가 있나요?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농어업경영인체육대회는 예년에 계속 그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의 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굳이 왜 그 부분만 당초예산에 따라 상정을 해서 계상을 합니까? 풀보조금에서 지급해도 되지 않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각과에서 풀보조금에서 여지껏 다른것을 주니까 풀보조에서 집행하느라고, 경영인체육대회만 매년,

○ 李洙現 委員 :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가까이 된것인데 요구도 계속 들어옵니다. 농정과에서 계속 들어오고,

○ 李洙現 委員 : 실장님 말씀도 대충 이해가 가는데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기타등등 무슨 체육대회도 전부다 이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농어업경영인뿐만 아니라, 어떤 집행의 원칙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계속되던 것이라도 여기서 지급해도 되는데 따로 계상을 하시는지,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50%정도가 농업군이라 해서 전통적으로 체육대회를 지원해 왔습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는 풀보조로 계속 지원이 되니까 풀보조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정선군 같은곳은 1억 5,000만원, 1억 7,000만원, 이렇게 금년도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글썄요. 정선군을

예를 들으시는데 내가 이 풀보조금 지급한 내역서를 보고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출해도 될 금액을 따로 유독 예산을 세우는지 그래서 여쭙보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기획감사실장님 제출하신 자료 102쪽을 보면 96 소규모주민생활편의사업 지원현황에서 예산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집행잔액이 4억 9,990만원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지원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0만원 나와있는걸로 나중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풀보조금 얘기하셨는데 다른실과소에서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풀에서 할려고 하는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하기가 어렵다는 예를 들어서 풀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그런점도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런데 농어업경영인도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 유독 이단체만 그렇게 준다는것은 관선이나 민선이나 똑같다는 애깁니다. 굳이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 입니다. 국도비내시 및 지원액에 보면 각 실과별로 거의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해당 실과에 질의해야 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 입니다. 각종 협의회 및 사회단체는 지원금이 보조 되는데 방위협의회 지원 예산계획은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없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사실 특별회비 같은것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행정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에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한달에 1만원씩 회비를 징수 해서 추석이라던가 설날에 군경위문을 합니다. 특별 지원금은 없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이번에 공비침투로 인해서 읍면의 예비군이 예산없이 많이 동원이 되다보니 협조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협조를 했습니다만, 방위협의회 운영 문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협조가 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방위협의회는 원래 목적이 군작전을 지원하고 ( 이후 녹음불량으로 청취불능 )

○ 金斗經 委員 : 지금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각자 매월 면단위 같은곳은 1만원씩, 이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런 비상사태에 들출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당연히 이번 작전동원에 군에서 지원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증액교부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원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창군 공무원 비위사실로 적발된 건수가 면별로 87건인데 몇년도 현황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96년도 현황입니다.

○ 金斗經 委員 : '96년도 87건이 조사가 되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훈계이상이 들어갔는데 견책, 감봉,

○ 金斗經 委員 : 주로 적발된 사항이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까? 혹시 투서나 진정이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감사에 있어서 60~70%가 되고 그다음 진정, 투서에 의해서 도에서 와가지고 투서를 조사하거나 비위사실을 적발해서 징계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 金斗經 委員 : 훈계하고 불문경고하고 차이점이 됩니까?

불문경고는 그사람이 징계사유가 견책에

해당될때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의결  
해은 결과 그사람이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사이상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경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문경고로 합니다. 불문경고  
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만, 견책으로서  
승진이라던가 호봉이 올라가는데 지연된  
다던가 이런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 金斗經 委員 :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감사기관  
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잘알았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김두경 위원이 질의하  
신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 하겠  
습니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거의가 직무태만 이  
런 부문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업인데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허위공문서작성 부분이 상당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  
사계에서 전혀 감사를 안하셨다고 인정  
하고 싶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원  
이 야기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도 감사를 안하셨나요?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감사는 군감  
사하고 읍면감사가 있는데 읍면감사는  
10월달에 일제히 민원봉사실장과 감사계  
장이 협의해가지고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지적이라던가 시정사항에 대해서 1차에  
한해서만 훈계를 했습니다. 큰 문제가  
된 사항의 것으로는 징계를 하지만 대단  
한 사항은 아니였기 때문에 1차로 교육  
겸해서 읍면에 1차로 하고 군에는 도에  
서 와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대화 양돈단지 사업장을 검토해보면 협  
조부서에다가 담당과장이 협조공문을  
띄운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전혀  
없다던가, 기타등등 여러가지 허위공문  
서가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부공무원들의 출장복명서가 전혀  
현지사정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이런 부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하시겠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양돈단지 관  
계는,

○ 李洙現 委員 : 그러니까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한테 사업부서와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안하고 했다던가, 또는 전혀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부분을 철저히 자체감사를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 입니다. 소송진행상황 제1심판결에서 93년 10월 29일 정부 승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에 대해서 제2심 판결 결과가 원고측 일부 승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정도를 일부 승소했다는 겁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95%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나머지 5%는 빠진 이유가 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첫번째 소송을 제기해 놓고 제가 내무과장을 거쳐서 기획감사실장까지 온 사항인데 정석진씨 동생이 정계진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만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계진이 가지고 있는 땅은 정석진의 명의로

되어 있는것은 우리한테 등기이전을 해주라 하고 승소를 했는데 동생 정계진 명의로 되어 있는것만 5%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95%가 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런데 나머지 5% 처리는 어떻게 할것이며 그다음 5%에 해당하는 평수는 몇평쯤 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5%정도 평수는 평수가 적은데 70평 정도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70평이면 공시지가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70평이면 공시지가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 禹康鎬 委員 : 2,000만원이면 실지 판매금액으로 10배만 잡아도 2억인데 2억이 그냥 다른사람한테 넘어가서 돌아오지 않는부분 아닙니까?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해가지고 받지 못한다는 부분은 불합리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정석진씨 땅은 택지로 조성하면서 김영진 의원님 계실때 택지조성을 해서 우리군에다가 도

로 정도의 땅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23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22명은 다 해결하고 한분만 해결이 안된 사항입니다. 아마 승소 할것으로 알고 있고 또 판결대로 따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禹康鎬 委員 : 글썄 대법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도 평창군이 이겨서 나머지 5%를 다 찾을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네.

○ 禹康鎬 委員 : 다음 28쪽입니다.

중국 흑룡강성 안달시 대표단 방문에 대해서 아까 이수현 위원께서 잠깐 질문하셨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가 한번도 회의도 거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수 있다는것은 위원의 한명으로서 자격지심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다음 얼마전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네분이 아마 심포지엄인가 세미나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강원도 환동

해권 지사 성장회의에 토론을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때는 어느분 어느분 갔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대화의 번영 회장, 평창의 박약국 사모님, 그다음 농민후계자 등 입니다.

그런데 참석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때 의회가 개원되어 참석을 잘 안할려고 합니다. 참석자가 없어서 도에서는 여섯분을 꼭 참석하라고 했는데,

○ 禹康鎬 委員 :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네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화면 번영회장님이나 약국 약사님, 전영씨, 농업경영인 회장이 참석했다는데 그때 물론 회기중도 아니였습니다. 이 날짜가 회기중도 아니였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되었다는것을 등기로 위촉장을 받고난 이후에 회의 통지도 못받았을 뿐더러 이분들 내분 보다 우리 군의원님들 대표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 되었는데 얼마나 대표성이 약한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그때 한것은 아마 의회 임시회 시기인것 같아서 얘기를 안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리고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교류의향서까지 교환을 하고 갔습니다. 군수께서는 가조인식을 갖고 돌아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교류의향서 정도는 괜찮겠지만 자구수정은 못한것 같습니다.

군수께서는 가조인식을 갖고 갔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가조인식을 그냥 막 할수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군수님이 가조인식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의향서로 서로 한번 방문해보고서 우리가 교류가치가 있고 앞으로 상호간에 서로 이익이 있어야 될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때 그때가서 조인식을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로 방문을 해보자하는 의향입니다.

○ 禹康鎬 委員 :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결정이 잘 이루어질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니다. 의향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다음 92쪽입니다.

심사요구사업에 보면 맨끝에 진부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9억짜리인데 예산부서에서 재검토 사유가 있었을것 같은데 다 반영이 되고 재검토 하기로한 재검토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진부진입로 확·포장공사는 97년도에 도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확정내시가 되어 있는데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도비가 확정되면 '97년도 예산이나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는겁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네.

○ 禹康鎬 委員 : 네. 알겠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상진부에서 진부 들어오는곳 말이지요?

○ 禹康鎬 委員 : 네. 그렇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2억 도비보조 내시를 받았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음은 98쪽입니다. 지역개발부문인데 용전교 가설공사가 우선순위 8위였거든요.

대화 미날교가 6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7위가 송정교입니다.

위협교량 1번으로 되어 있는 송정교가 7번인데 6번사업하고 7번사업은 빼고 8번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이것도 송정교가 '97년도 양여금지원을 받고 또 도비도 지원을 받고 그렇게 '97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97년도 사업계상에 3억이 올라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순위가 우리가 7위도 있는데 8위를 앞당겨서 '96년도 할려고 했던 사업을 왜 '97년도까지 1년씩이나 늦추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용전교 8위는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답변이 그렇게 타당한 답변같지 않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틀림없이 양여금 사업으로 용전교가 착공하지 않습니까?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다음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피해보상 및 국도비 지원 현황인데요. 피해보상액도 그렇고 농업경영자금지원 용자가 21억 4,000만원 입니다.

여기에 용자비율이나 이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용자가 5%입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다음 자금용자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것은 알고 계시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네.

○ 禹康鎬 委員 : 사실 그림의 떡이지 지원받을수 있는것이 쉬운것이 아닌데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농자금 상환 연기는 어느정도 연기가

되는 겁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단기성 1년치가 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1년이면 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가격하락 이런것으로 인해서 예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단기성 1년치는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한것 같습니다.

무장공비 침투 피해에 관련해서 지역내 현안사업비 지원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화면 신3리 ~ 진부면 마평1리간 모릿재 터널공사, 진부면 쓰레기매립장 조성, 봉평상수도 시설확장공사, 무장공비침투지역 집중혜택에 상당히 미비한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지원요청한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중앙이나 도를 통해서 사업을 간접적인 지원이 되겠는데 도에서 3건만 큼직큼직 한것으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조금조금 2억, 3억짜리 해가지고 3건 올려봐야 10억도 안될것이고 우리군에 대표적으로 필요한 사업, 액수가 많은 사업, 대화면 신3리

~진부 마평1리간등 큰사업을 요구를 해달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사업요구는 그렇게 했겠지만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피해보상은 침투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떨어지는 그런 사업지원 요청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모릿재 터널도 앞으로 준비도 많이 투자되어야 할것이고 진부 쓰레기매립장도 준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어야 할겁니다.

만약 책정해서 사업비가 내려온다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다른곳으로 돌려서 직접 보상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할수 있지 않나,

○ 禹康鎬 委員 : 그럼 실질적인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실과소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94년도가 20억, '95년도가 37억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94년도 20억이면 '95년도에는 최대한

사업을 잘하고 그래서 불용액이 20억 이하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95년도에는 무려 37억, 17억이 증가했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보광이 들어서고 해서 연말에 취득세를 부과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았던 세입이 들어왔고 아무래도 불용액이 남았다 하지만 금년도 1회추경에 상당히 거창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禹康鎬 委員 : 불용액이 37억정도가 된다는것은 나중에 세입이 잡혔던 어쨌던 간에 사업을 그렇게 규모있게 짜임새있게 운영을 잘 못했다는 그런거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전에 재무과장을 해보니까 용평이 개발이 되어서 콘도와 스키장, 그다음 골프장이 되어서 연말에 생각지도 않았던 세입이 들어오는데 또 이듬해에 잡아야 되는데 그때 잡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음 165쪽에 보면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일부읍면에 편중됨이 없이 전 읍면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95년, '96년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현안들을 고루 잘 안배해서 불편함이 없게 해주었으면 하는 처리요구사항과 처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뒷장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처리결과에 보면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조정을 위해 매년 익년도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견, 사업의 시급성, 효과등을 심사 투자순위를 확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군수 의지사업의 취향을 맞추어서 해준다는 애깁니까?

의지사업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애깁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그런것은 아니고 주민들께서 요구하고 읍면장이 요구하고 의원님들이 아마 면장님을 통해서 요구를 하도록 해서 면장을 통해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받는데 주민숙원사업을 할사업을 어

느정도 범위내에서 줄테니까 사업집행을 올려라, 그러면 읍면장이 올립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도 기획감사실에서 각 읍면에다가 사업 우선순위를 포함해서 사업비, 사업명, 다 올려서 사업조서까지 다 받았지 않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네.

○ 禹康鎬 委員 : 각 실과소장들은 전혀 모릅니다. 실과소장들은 모릅니다.

협의를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진부면 예를 드는것이 아닙니다.

저도 직접 확인해 보았지만 다른의원님들도 같이 확인해 보았는데 면에서 올라온 기획감사실에 있는 사업조서와 사업내용하고 각 실과소에서 올린것, 그다음 실과소에 다시 물어보면 그런것 본적도 없고 들은적도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런 사업계획서나 사업조서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읍면장이라던

가 총무계장이 예산부서에서 근무를 한 사람은 다 이해를 해가지고 사업부서와 협조가 되고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조치가 되도록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기획감사실장께서 면장들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그런것을 꼭 가르쳐 주세요.

그다음 201쪽입니다.

환경미화원에 관한것인데 4회추경에 일부 삭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불용액이유가 됩니까?

1억 5,000만원이 불용액이 되는데,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진부면 같은 곳은 당초에 4명을 고용토록 하고서 1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렇게 고용이 되었고 다른면 같은곳을 보면 그만두는 사람이 예산편성 할때는 1년내내 편성하는데 6월까지만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쓰는 사람도 그동안 늦게 고용되고 그래서 기간이 실지 근무한 인

건비가 절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음 216쪽입니다.

국비, 도비내시 및 지원액인데 '95년하고 '96년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95년도에는 무려 250억입니다.

'96년도에는 180억이고,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95년도는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았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음 위원회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창군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회의를 한번도 하지않은 위원회가 몇개 정도 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정확하게 위원회를 못하고 있는 것은 모르지만 몇개 정도 일겁니다.

○ 禹康鎬 委員 : 1년가도 한번도 회의를 하지않은 위원회는 존재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는 폐지를 한다던가, 위원회 해체를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겁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위원회 통폐합을 내무과장할때 엄청많이 했는데 또 위원회가 이상하게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위원회를 만들도록, 통폐합을 해놓으면 또 그러고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통폐합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96년도 3/4분기 주요 추진사업 분석표인데 다른것은 몰라도 3/4분기것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착공자연사업이 2개나 있습니다.

관광농원사업, 소교량가설사업, 기타 추진과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자연사업 4건이 있는데 관광농원사업은 어디의 겁니까? 소교량 사업하고,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관광농원사업은 상안미인데 교량노후로 인해서 (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

1억이상 사업은 토목공무원들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워서 내년까지 완벽 시공을 해야 되겠다고

○ 禹康鎬 委員 : 아니 착공자연사업 총괄이라고 했는데 관광농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상안미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

에서 사업장, 소교량등 여러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소교량가설사업 2건중 1건은 관광농원 사업이고 나머지 1건은 소교량 가설사업인데 1건은 구체적으로 어디의 것이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건수로는 소교량가설 사업이 8개소나 있습니다. 8개소중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조그만 교량이 1억이상 되는것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지금 뽑고 있습니다.

(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 禹康鎬 委員 : 소교량가설사업 1억미만, 1억이상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사업 심사분석표를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총평이고 분야별 평가이고 완료사업, 부진사업으로 되어 나와 있는것이 아주 개괄적입니다. 적어도 심사분석표 만큼은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잘되었다 라는 총평도 나와야 될것이고 분야별 평가도 있어야 될것이고 그다음 완료사업도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료가 되었

다, 차후에 이런 사업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라던가, 그다음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이리이러한 사업이 부진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을 개선하겠다 라던가 그런것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아요. 그다음 중단사업은 왜서 중단이 되었는지 간단한 이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분석표는 그냥 자료보관용으로만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활용 가치는 없습니다.

그다음 제가 질문서에 내려왔으니까 앞으로는 분기별 심사분석표를 저희 의원들도 우리 관내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1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慶鎭 委員 : 이경진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예산집행내역, 강원일보 창간 광고 550만원, 아침신문 창간 광고 275만원, 올해 이 두가지만 하는겁니까? 이제 다 끝나는 겁

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창간광고를 하는 의미, 어떤효과가 있는것인지 신문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광고를 하셔야 할것 같은데 지방지가 3개가 있는데 1개소는 안하는것 같고,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창간광고는 현재로서는 마칠려고 합니다.

○ 李慶鎭 委員 : 광고의 의미가 군정홍보를 하는겁니까? 아니면 축하한다고 돈을 주는것이 아닙니까?

더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소가 있는데 왜 2개소만 하고 1개소는 안하느냐고 얘기를 더이상 안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광고를 하실때 편집, 기획,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다 얘기를 꼭 해달라는 말을 몇번 했는데.....,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의향을 들었을텐데,

○ 李慶鎭 委員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민원봉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광고를 하실때

문안이나 기획을 할 단계에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의회에서 보는것하고 이럴때는 이런 광고가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기획을 할 당시에 의회에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되던 안되던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의원님들이 도암도 계시고 진부도 계시고 하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연간 30억정도 되지요?

제가 군정질문때도 했는데 해태음료가 회사측 계획대로 100% 잘 추진이 되면 지방세로 30억이 세수가 잡힙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해태음료를 지원하길은 물만 팔아주면 됩니다.

물 팔아주는것 창간광고 할때에 돈을 500만원씩 그냥 지원해 주는것과 마찬가지로 그 때 광고에다 우리지역에 해태음료가 있는데 물이 좋다, 광고도 해주고 그러면 손 안대고 30억씩 버는 것인

데 그런부분이 전혀 의회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창간광고를 할때도 해태음료 같은것도 선전해줄 필요가 있는데 군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부분들이 의견교류가 전혀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상 눈꽃축제라던가 이런것 하는것 보면 1년에 275만원씩 계속 광고비로 나가는데 실지 쌍용이나 보광이나 대기업에서 해태음료를 사서 먹는곳이 몇개소나 있는지 압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부다 일화생수인가 전부 들어오더라구요. 평창군에서 생산하는 생수가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지 CD를 해가지고 20억 1,800만원인가 이자 수입을 올렸다고 상당히 흥분되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지 이런것 보다는 해태음료 같은 지방업체들이 들어왔을때 활성화할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홍보자료에 광고 같은것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행정기관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하고 그다음 30억은 매출액의 10%입니다.

○ 李慶鎭 委員 : 매출액의 10%인데 그 사람들이 계산하는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이것저것 다 설명드릴수는 없지만 회사대로 하면 30억인데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것이 30억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300억이 매출이 되었을때 30억이 됩니다. 1년에 300억원어치를 팔아야지만 10%를 받는데,

○ 李慶鎭 委員 : 이것은 회사에서 하는 계획안인데 우리는 그 액수가 사실과 같던 다르던 간에 그것을 떠나서 지역에 생수업체가 단 1개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정업체라고 할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생수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외지 기업을 유치하려고 기업유치계를 만드는 동네도 있는데 만들어 놓은 회사를 물건 팔아주는 광고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특정업체를 옹호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그런데 그런

업체별로 자기네들이 광고를 많이 합니다.

○ 李慶鎭 委員 : 본질적인것을 말씀드린것은 광고나 태백문화 라던가 창간광고 라던가 하여튼 우리군에서 일간지나 잡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그중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쓰는 경우도 있는데 특정업체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고 광고문안에 해태음료의 음료수를 많이 팔수 있으면 지역 지방세에 20~30억정도가 세입으로 잡힌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광고문안을 작성하실때 참고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좋은 생각인데 저희들이 용평이나 보광은 현재 모르고는 몰라도 보광같은곳은 사업이 시작되었을때부터 끝까지 군세에 200억은 수입을 할겁니다. 제가 재무과장 할때 용평은 80억을 징수했거든요.

지금 보광같은곳은 200억정도는.....,

○ 李慶鎭 委員 : 글썽 용평스키장에

'95년도 지방세는 약 15억정도밖에 안됩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간접적으로 하면 20억가까이 됩니다.

○ 李慶鎭 委員 : 중요한것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지에서는 기업유치계 직원들이 몇번씩 방문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억씩 들여서 시설투자하지 않고 손안대고 코푸는데 그런데 광고를 해서 돈벌이를 할려고 생각을 해야지 위험부담이 없는데 광고를 게재하실때 그런쪽에 관심을 가지고 문안을 작성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검토 하겠습니다.

○ 委員長 禹康鎬 : 보충질의 하실 의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제가 한가지만 기획감사실에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CD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CD매입 재원확충 한몫, 평창군의 재정에 7% 올렸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는데 이 대대적인 광고는 평창군 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도비나 군비를 받을때에, 이렇게 돈많은 군에다가 우선순위로 주겠습니까?

이것은 비효과적인 기사는 실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時30分 監査中止)

(16時45分 監査繼續)

○ 委員長 禹康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민원봉사실장 이 영 덕

(민원봉사실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禹康鎬 : 다음은 감사대상사

무를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 사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가로등 사후관리에 대해서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재료라던가 인원의 어려움이 제시됐지만 지금 전혀 보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한두개밖에 수리를 못하고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출장을 나와서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번에 우리 평창군에 민원봉사실 신축에 앞서서 현지견학을 다녀 오셨는데 특이한 내용이 있으면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이수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926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가로등이 817개, 보안등·방범등이 215개, 농어촌가로등이 894개가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설치할때는 각 부서가 다릅니다. 도시과에서도 하고 그전에 농정과인 산업과에서 하고 그다음 읍면에서도 하고 또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안되어서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안되고 스위치가 망가졌다던가 또 전구가 나가고 그때만 가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로등을 관리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가로등 관리체계를 일단 바꿔야 되겠다, 왜 바꿔야 되는가 하면 저희가 전체에 맞춰서 사후관리를 하기가 어려운것이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등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해당읍면에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망가진것은 해당읍면에서 해주고 기획실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내년서 부터는 예산을, 그러니까 노후된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일이 많아서 계속 전구만 갈아주고 있다 보니까 안되어서 아주 완전히 공사할것은 개수차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내년예산은 그렇게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로등 정비체계를, 사실 저희가 매년 가로등 요금을 내면서 고장이나서 또 차가 사고를 일으켜서 그냥 방치되는것이 많습니 다. 그런것도 요금이 그냥 나가는것인 데 앞으로 ( 이후 녹음불량으로 청취불 능)

○ 李洙現 委員 : 관리는 계속 민원봉사실에서 하시는 겁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영덕 : 그러니까 간단한것은 하고 전체적인 사후관리는 앞으로 읍면에 예산을 쥐가지고 전체적인 보수는 그렇게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사후관리비를 읍면별로 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 신축에 앞서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몇군대를 다녀 왔습니다. 지난 '95년 3월달에는 '95년도 대민창구 우수기관인 경기도 하남시 하고 충주시, 청주시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는 설계와 구조 규모를 보기위해

서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 '95년 10월달에는 '94행정정보센타 시범기관인 경기도 수원시와 부천시 원미구, 여주군, 용인시, 고양시, 안산시를 다녀와서 행정정보센타 운영실태하고 규모, 면적 이런것을 보았고 지난 10월달에는 제가 인솔해가지고 가서 '95년도 내무부선정 우수기관인 대전 유성구와 부산 해운대구, 김천시, 창원시, 칠곡군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운영에 대한 전반과 그다음 민원실매치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운영상황을 주로 봤고 그다음 배치상황과 전체 종합적인것을 보고와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실에서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 골라서 저희가 종합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해서 각종시책을 구상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이 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劉熾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앞으로 민원실장님, 우리 종합민원실이 된다면 거기서 1회방문 민원을 위해서 안내하는 공무원이 어떤분이 거기에 앉아서 민원인이 오는 업무를 어떻게 볼것인지, 안내가 다른시군은 있는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내자가 공직자 말고 공무원으로 오래 있다고 퇴직한 사람으로 하실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제가 종합민원실을 되면 각과에서 민원을 취급하는 공무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실에서 거의다 업무가 처리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상담위원이 있습니다. 과거 행정경력 이 있는분을 한분 상근을 시킬까, 아니면 저희 실과장이나 계장이 하나씩 할까 하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것이 좋은지 창원시에 가니까 전직 공무원 두분을 상근시켜서 하고 있고 저희군에서는 일반인을 수당까지 줘가면서 상근시키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종합민원실

이 되면 민원인들이 오셔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劉熾文 委員 :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잘하셔서 읍면에서 오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입니다. 현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3만원이 몇년도부터 3만원입니까?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민원공무원 수당이 2만원씩 하다가 금년 7월부터 3만원씩 올라서 3만원입니다.

○ 金斗經 委員 : 다른 업무의 수당하고는 차이가 보통 3만원내지 2만원이지요?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네.

○ 金斗經 委員 : 이것을 앞으로 다시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저희가 민원 감사라던가 그다음 확인을 올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더군다나 작년에 2만원 하다가 3만원으로 50% 올랐기 때문에 다른부서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사기양양책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담배인삼공사에서 전적으로 취급하도록 개선책을 건의하거나 또는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저희가 그 관계가 불합리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이것은 하나의 군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지정지구만 군에서 처리하는것 아닙니까?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인한테 받아가지고 담배인삼공사에 보내주면 거기서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합니다.

○ 金斗經 委員 : 그렇다면 면허세나 하나도 받을 근거도 없네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문절차에 해당되는 업소가 있었는지 혹시 그러한 사항 건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청문은 주로 시행하는대로 상공과의 운수관계 하고

( 이후 녹음불량으로 청취불능)

○ 金斗經 委員 : 네. 알았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입니다. 민원인 1회방문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평창군 근처뿐만 아니고 도암면 같은곳은 한번씩 왔다 가자면 하루 시간이 걸려야 하는데 대부분 여론이 민원처리가 1회 방문을 해서는 안된다, 네번, 다섯번, 어떤사람은 열번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주민들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원인이 방문하게 되면 인허가 문제라던가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잘 알려줘서 한번오면 처리가 될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그래서 저희가 종합민원실을 신축하는것도 군수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시다만, 그런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민원실을 만들어 가지고 가급적 민원인이 적게 오시도록, 오셔도 각과를 방문안하셔도 민원실에서 전부 불일을 볼수 있게 하기 위

해서 종합민원실을 신축하는 것이니까 그 계가 종합민원실에 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종합민원 실무회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몇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같은 군단위에서 민원을 한군데 모아놓은곳이 없습니다. 오셔서 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이경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전담부서 민원처리과정 추적관리, 고충민원 접수처리, 54페이지에 보면 불법농지전용 고발2차, 조사결과 위법사항 발견하지 못했음. 이것은 무슨내용입니까?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54페이지에 불법농지전용 고발2차 결과가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은 무슨얘기인지.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그것은 농정 과에서 취급한것인데 불법농지전용이 되었다고 김기진씨가 2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김기진씨

가 얘기한것처럼 그렇게 위법사항이 아니고 적법하게 되었다는 애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진정하신것은 위법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나가서 해보니까 위법사항이 아니다 라는 애깁니다.

○ 李慶鎭 委員 : 김기진씨는 어떤 근거도 없이 그럴것이다 하고 추측해서 고발한건가요?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그러니까 김기진씨가 그동안 농지관계 때문에 무조건 진정서를 냈었는데 개인감정 때문에 그런일이 있어가지고 민원인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것을 많이 합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리고 맨말에 사고위험지방도정비의건의, 마을안길농로개설 처리결과에 보면 강원도에 건의, 계획에 없으나 검토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저희가 지금 각 과에서 처리한것을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이 관계는 건설과 하시면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관

계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러시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민원업무추적관리 차원에서 확실하게 추적관리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황자체가 파악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아니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민원사무처리부에다 동재를 하고 각과에 돌려주면 각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기한을 전부 적어가지고 그날 그날 안들어온것은 매주 금요일날 처리집계를 냅니다.

그리고 기한이 넘는것은 왜 빨리 안하느냐 하고 독촉장도 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그다음 다 된뒤에는 저희가 통제를 해줍니다. 통제를 해서 가하냐 아니냐 하는 통제를 하지 그 내용까지 직접처리 는 해당과에서 합니다.

○ 李慶鎭 委員 : 날짜, 처리기간 정도만 관리를 하신다는 애깁니까? 전담부서의 민원처리과정 추적관리라는

뜻이 날짜 같은것만 하는것이지 어떤내용에 의해서 왜 안되는지 언제쯤 되는것인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것은 아니지요?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날짜까지도 파악을 하고 주로 저희가 하는것은 날짜를 어기냐 안어기냐 그런관계를 주로 합니다. 그다음 인허가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것도 저희가 따지기는 합니다만, 그런것에 대해서는 인허가 반려에 대해서는 기관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합니다.

○ 李慶鎭 委員 : 제가 보기에 이런 수준까지는 하신다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창 우회도로공사 피해호소와 관련해서 처리결과가 국토관리청에 이송 현지조사 후 처리하겠다, 상당히 중요한 민원인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이것은 저희가 처리하는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해서

국토관리청에다 이첩을 합니다.

○ 李慶鎮 委員 : 이첩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국토관리청이나 군청을 상대로 해서 농번기 바쁜데 이런얘기를 하는데 이런정도가 대표적으로 우리군에서 쟁겨줘야할 부분이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국토관리청까지 갈수도 없지 않습니까? 민원 추적관리해서 처리하는 차원에서 민원인 서비스차원에서도 국토관리청에다 전화도 한번 하시고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사람들이 피해보상을 받았는지 이런 배려가 있어야만 군수가 잘하니 못하니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첩만 해놓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이것은 도시과에서 이첩했으니까 도시과에 회신이 왔을겁니다.

○ 李慶鎮 委員 : 서류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정도는 과장님 오늘 이시간에 판단하고 나오셔야 할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입니다. 민원사무처리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불

허나 반려건수는 상당한 각과에 많이 있습니다. 또 그후에 본인들이 다시금 민원서류를 제출했을때 재신청허가가 처리된것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당초 허가서류를 냈을때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서 재신청 허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공무원들이 충분한 민원에 대한 연찬을 교육받아서 군민들이 민원창구에 왔을때 여러번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또 여기 자료를 보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李慶鎮 委員 : 가로등 현황 및 사후관리실적이 있는데 사후관리는 물론 보수도 중요하고 또 부족하고 모자라는것은 다시 만드는것도 중요한데, 시간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봄이나 여름이나 6시 반 똑같고, 요즘은 컴컴한데 불꺼지고 그러는데 그런것은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그것은 읍면에서도 관리를 하고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성장 앞 의것을 보니까 6시에 꺼지는데 6시에 꺼지면 좀 그러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6시 반에서 한 40분정도에 꺼지도록 할려고 합니다. 계절별로 조정을 하는데 너무 일찍꺼면 그래서 여름과 겨울철은 조정을 해가지고 가로등이 제때에 꺼질수 있도록 합니다.

○ 李慶鎭 委員 : 지금 종부 보건의료원 앞의 가로등 시간조정을 하셔야 할겁니다. 여러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던데 30분정도 더 늦추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지금 한밤중에 꺼진다고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새벽에 컴컴한데 불은꺼지고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96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미착금이 2,50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전자주민카드 화상회의 시스템 사업비하고요 병무행정 관리사업비등 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53페이지에 있는 고층민원진정건의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실 사항별로 처리, 그러니까 민원내용, 상세한내용, 들어온 원본을 2부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53페이지 말입니까?

○ 禹康鎬 委員 : 53쪽, 54쪽, 55쪽해서 60쪽까지 들어온 고층민원처리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편입농지보상까지 10월 28일 들어온것 까지 민원내용 원본을 2부씩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네.

○ 李慶鎭 委員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봉사 차원에서 해당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장평 000번지상에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검토결과 적법하여 건축물 대장의 등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오니 면사무소 재무계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시기 바라며 3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있거든요. 여기서 공문을 받고 면사무소에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 민원인이 다시가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농협에 내야 하는데 아예 이런 공문을 내보낼때 고지서까지 같이 붙여서 공문을 보내면 면사무소를 안가고 바로 농협에 제출하면 되는데 그런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겠끔 해당 되시면 참고로 해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지금 말씀하신 취득세는 먼저 고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신고에 의해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고지서를 발급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러니 본인이 꼭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까?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네.

그래서 재무과 세무부서에서 많이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 委員長 禹康鎬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11월 25일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時15分 監査終了)

○ 出席委員

委員長 禹 康 鎬  
 幹 事 金 斗 經  
 委 員 李 慶 鎭  
 委 員 劉 燉 文  
 委 員 李 相 薰  
 委 員 李 洙 現  
 委 員 金 鍾 永

○ 委員아닌 議員

議 長 金 樂 雲

○ 출석공무원

郡 守 金 容 郁  
 副 郡 守 朴 容 康  
 農村指導所長 劉 載 國  
 企劃監査室長 金 榮 柱  
 民願奉仕室長 李 永 德  
 觀光文化課長 權 赫 昇  
 內 務 課 長 姜 慶 錫  
 財 務 課 長 申 大 松  
 地域開發課長 宋 在 明

地 籍 課 長 南 大 鉉  
 福 祉 課 長 朴 靜 子  
 環境保護課長 趙 圭 植  
 商 工 課 長 金 昌 吉  
 畜 産 課 長 鄭 義 秀  
 山 林 課 長 孫 榮 澤  
 建 設 課 長 안원수  
 都 市 課 長 金 學 根  
 民防衛災難管理課長 姜 仁 洙  
 保健事業課長 孫 東 欽  
 社會指導課長 李 宇 炯  
 技術普及課長 韓 用 球

○ 議會事務課

專 門 委 員 辛 敦 善  
 議 事 係 長 全 完 鐸  
 地方行政西紀 鄭 成 文

【 議 席 】

○ 議席表 ( 4 面에 실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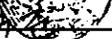
## 질의 · 답변서

질의	이상훈 위원	답변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회의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감사특위 ( '96. 11. 25)		
<p>〈질의요지〉</p> <p>- 도암면 용산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관련 서류 사본 제출</p>			

〈답 변〉

- 별 첨 -

#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계 장	회계과장 (부읍면장)	경리관	96년도 일반회계		계	지출원	
			세출과목				
발 의	96. 4. 23 	장	일반행정비		발 의	96. 7. 05 	
원인행위 부기재	96. 4. 25 	관	일반행정비		지출부기재	96. 7. 05 	
계 약	96. 4. 23 	항	내무행정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96. 7. 05 	
검 수	96. 6. 28 	세항	사회진흥		지급명령 번호	제 106 호	
		세세항	시도비보전사업				
		목	401-04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margin: 10px 0;">일금 이천육백이십칠만원정</div>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26,270,000 -</p>							
적 요	용산1(출병)봉촌 마을길 포장 공사비 지출		거래은행 계좌번호	255-01 - 474934			
채 주	주 소	강릉시 포남동 1178 					
	상 호	성 명	주식회사 삼양 				
			대표이사 권혁준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강릉시 포남동 1178-13 (주) 삼양 	
						대표이사 권혁준 	
주 관 과							
취 급 자	과						
							

<작성요령>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

# 준 공 검 사 조 서

공 사 명 : 용산1 (솔봉) 농촌 마을길 포장공사

1996 년 6 월 22 일 준공

1996 년 4 월 23 일 (주)삼양 권혁춘 계약분

사 업 비 : 금26,270,000원 (이천육백이십칠만원정)

위 준공검사의 명을받아 1996 년 7 월 5 일 검사한 결과 공사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 하였음을 인정함.

1996 년 7 월 5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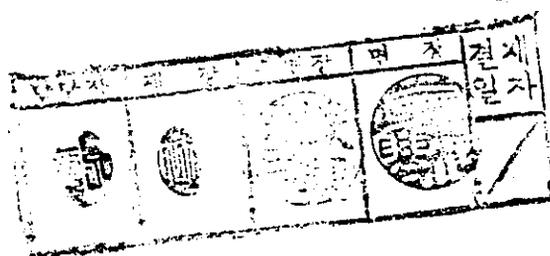
준공검사관 지방토목서기 김재열



입 회 인 총무계장 김군섭



귀 하



# 공사감독관(준공)감독조서

공사명 : 용산1리 (솔봉) 농촌마을길 포장공사

1996년 4월 23일 (주)삼양 권혁춘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1996년 4월 25일부터 1996년 6월 22일까지 실시 현장 감독한 결과 (제 - 회 기성부문 검사까지의)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제 시방서 및 품질 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되로 어김없이 전 공사의 100%가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1996년 6월 22일

공사 감독관 지방토목주사 김남규 (인)

도안면장 귀하

문서번호 도암13240-155

시행일자 1996. 7. 5

받음 봉명면장

참조 산업개발계

취금		면 장
보존		[Handwritten Signature]
부면장	[Seal]	
만든이	김 경 [Seal]	총무계장 [Seal]
		협 조

제목 '96 농촌 마을길 포장공사 준공검사 의뢰

진흥 13240-509('96. 6. 24)호에 의거 '96 우리면 농촌마을길 포장공사 준공  
 검사를 의뢰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검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전원)

사업명 (사업기간)	위치	사업량	발주처	시공자	사업비	준공일	준검기	공사한	비고
용산1(솔봉 농촌마을길 포장공사 '96. 4. 25 ~ 6. 23)	용 산 1	콘크리트포장 L=640m, B=4. 0m, T=0. 2m 하수도총관 D=260m/m L=7. 5	도 암 면	(주) 삼양 권혁춘	26, 270	'96. 6. 22	'96. 7. 6		

끝.

도                      암                      면                      장

# 竣 工 報 告 書

工事名 : 용산 1리 (솔봉) 농촌마을길 포장공사

都給額 : 一金이천육백이십칠만원정(₩26,270,000)

契約年月日 : 西紀 1996 年 04 月 23 日

着工年月日 : 西紀 1996 年 04 月 25 日

竣工豫定日 : 西紀 1996 年 06 月 23 日

竣工年月日 : 西紀 1996 年 06 月 22 日

上記와 같이 竣工되었기에 竣工계를 提出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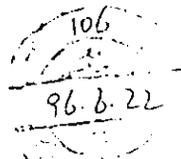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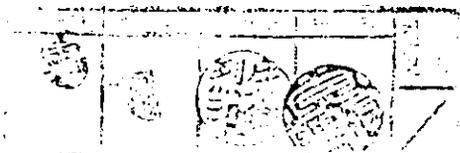
西紀 1996 年 06 月 22 日

江原道 江陵市 浦南洞 1178-13

株 式 會 社 三 洋  
代 表 理 事 權 赫 春



보 임 전 칭 貴 下



# 준공검사원

감독관 경유검남차



工 事 名 : 용산 1리 (솔봉) 농촌마을길 포장공사  
工 事 位 置 :  
契 約 金 額 : 一金 이천육백이십칠만원정(₩26,270,000)  
契 約 年 月 日 : 西紀 199 6 年 04 月 23 日  
着 工 年 月 日 : 西紀 199 6 年 04 月 25 日  
竣 工 期 限 : 西紀 199 6 年 06 月 23 日  
實地竣工年月日 : 西紀 199 6 年 06 月 22 日  
添 附 書 類 : 竣 工 寫 眞

위 工事의 都給施行에 있어서 工事全般에 걸쳐 工事設計圖書, 試放書, 品質基準 및 其他 契約대로 어김없이 竣工하였음을 確認하오며 만약 工事의 施工監督檢査에 관하여 瑕疵가 發見時에는 瑕疵 擔保期間 前後를 莫論하고 實額辨償 또는 再施工할 것을 誓約하고 이에 준공계를 提出 합니다.

西紀 199 6 年 06 月 22 日

江原道 江陵市 浦南洞 1178-13

株 式 會 社 三 洋  
代 表 理 事 權 赫 春



도 암 면 장 貴 下

# 도 입 면

우 232-050 / 강원 명창군 도암면 황계1리 335-1 / 전화 32-5301~3 / 담당 김경애

문서번호 도암43160-  
 시행일자 1996. 6. 3  
 받음 내부결재  
 참조

취급		면 장
보 존		
부 면 장		
만 든 이	김 경 애	총무계장 
		편 조

제목 용산1(슬봉) 농촌마을길 포장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제결

용산1(슬봉) 농촌마을길 포장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을 아래과같이 제결하고자 합니다.

1. 공사명 : 용산1(슬봉) 농촌마을길 포장공사
2. 위치 : 용산1
3. 변경전계약금액 : 금 23,087,000원 (이전삼백팔만칠천원정)  
 변경후계약금액 : 금 26,270,000원 (이전육백이십칠만원정)  
 증 액 : 금 3,182,910원 (삼백일십팔만이천구백일십원정)
4. 공사개요 : 콘크리트포장 L = 640m B = 4.0m T = 0.2m  
 하부용관 D=600mm L=7.5m
5. 계약자 : (주) 삼양 권혁준
6. 공사기간 : '96. 4. 25 ~ 6. 23 (60일간)
7. 예산과목 :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부행정, 사회진흥, 시도비보조사업,  
 401-04. 끝.

## 시설공사변경 (추가도급) 계약서

공 고 번 호	제 호	계 약 번 호	제 호	
공 사 명	용산1리(술봉) 농촌마을길 포장공사			
현 장	용산1(술봉)			
○변경전계약금액	이전삼백팔만칠천구십	원정	23,087,090- 원	
○변경후계약금액	이전육백이십칠만	원정	26,270,000- 원	
○증 감	삼백일십팔만이천구백일십	원정	3,182,910- 원	
추가계약보증금	육십삼만육천오백팔십 원정	수 요 기 간		
변경전준공기한	1996. 6. 23	변경후준공기한	1996. 6. 23	
기타 변경 사항				
<p>위의 시설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자는 시설공사 계약입찰 유의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등은 물론, 본계약이 규정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전 모든 계약서의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공사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본 공사를 성실히 완공 할것을 약속하여,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 할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년 6 월 3 일</p>				
계 약 자	주 소	강릉시 포항동 1178-13	전 화 번 호	651-8394
	대 표	권혁	주민등록번호	351020- [REDACTED]
연 대 보 증 인	주 소	전문건설공제조합	전 화 번 호	
	대 표		주민등록번호	
연 대 보 증 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주민등록번호	
계 약 담 당 부 우 령	도 암 민 장                      성 명                      김      광      근			

문서번호 도암 45112 -

시행일자 1996. 6.

(경유)

받는곳 내 부 결 재

참 조

취급		면 장
보존	년	각
부면장		
		총무계 
기안	김 남 규 	협 조

제 목 용산1리(솔봉)농촌마을길 포장공사(설계변경) 시행결의

용산1리(솔봉)농촌마을길 포장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사명 : 용산1리(솔봉)농촌마을길 포장공사
2. 공사 개요 :

— 당 초 : 콘크리트포장 B = 4.0m, L = 600 m

— 변 경 : 콘크리트포장 B = 4.0m, L = 640 m  
하수도涵管 D=600mm, L= 7.5 m

3. 공사 금액 :

— 당 초 : 금 이전삼백팔만칠천구십원 (₩23,087,090-)

— 변 경 : 금 이전육백이십칠만원 (₩26,270,000-)

결 의 : 설계 변경 도서 1부. 끝.

도 양 민 신

1. 출장지시 : 1966. 6. 5.

2. 출장지 : 용산 1 리

3. 출장자 직, 성명 : 지방토목주사보 김 남 규

4. 출장목적 : 용산1리(솔봉) 농촌마을길 포장공사 감독 수행

5. 수행내용 : 상기 본인은 용산1리(솔봉) 농촌마을길 포장공사 감독공무원으로서 감독업무 수행중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되었기 설계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다 음

당 초 설 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콘크리트포장 B = 4.0 m L = 600 m	콘크리트포장 B = 4.0 m L = 640 m 증 40 m 하수도흡관 D = 600 mm L = 7.5 m	- 콘크리트포장 위치조정역건 No. 0에서 No. 15 지점은 특정 입체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주민합의 결정 건의에 따라 위치변경하며 이에따른 횡단 배수로 신설및 집행찬역으로 비포장구간 40미터 연장 시공

상기와 같이 출장 복명 합니다.

1966. 6. 5.

출장자 직, 성명 : 지방토목주사보 김 남 규

출장지 : 용산 1 리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notes and stamps

# 착공계

工事名 : 용산 1리 (솔봉)농촌마을길 포장공사

契約金額 : 一金이천삼백십팔만칠천백구십원정(₩23,087,090)

契約年月日 : 西紀 19 96 年 04 月 23 日

着工日 : 西紀 19 96 年 04 月 25 日

竣工豫定日 : 西紀 19 96 年 06 月 23 日

위와 같이 着工하였기에 提出합니다.

西紀 19 96 年 04 月 25 日

江原道 江陵市 浦南洞 1178-13

株式會社 三洋  
代表理事 權赫春



도암변장 貴下

과다자	계장	부원장	부총	결재자

# 현 장 대 리 인 제

工 事 名 : 용산1리(솔봉)농촌마을길 포장공사

위 工 事 現 場 代 理 人          土 木 技 士 1  급

자  격  번  호          95202110071c    소  지  자          유영걸

로  정  하  였  기  에  提  出  하  م  다.

西  紀  1996  年  04  月  25  日

江  原  道  江  陵  市  浦  南  洞  1178-1

株  式  會  社  三  洋

代  表  理  事  權  赫  春



도  암  면  장  貴  下





공 사 로 급 모 은 계 약 서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자	도암면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b>유상양</b> ·주 소: <b>상주시 포석동 1118-13</b> ·대표자: <b>권혁준</b>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연 대 보 증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b>전주건설공제조합</b> ·주 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 사 명	용산1 (술용) 농촌 마을길 포장공사	
계 약 금 액	금이전삼백팔만칠천구십 원정 (₩ 23,087,090 -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	
계 약 보 증 금	금오백이십사만칠천육십 원정 (₩ 5,247,060 - )	
현 금		
지 체 상 금 율	0.001 %	
물가 변동 계약 금액 조정 방법		
작 공 년 월 일	19 96 년 4 월 25 일	
준 공 년 월 일	19 96 년 6 월 23 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 (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 종	공 종 별 계 약 금 액	하자보수보증금율(%)및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복 공 종	₩ 23,087,090	( 3 %) 692,610 원정	2 년
		( )%금 원정	
		( )%금 원정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본임시류 1. 공사인장유 의서 1부  
2. 당사 계약일반조건 1부

1996 년 4 월 23 일

계약담당공무원 도암면장 김 학근 (인)  
계약상대자 유상양 권혁준 (인)  
연대보증인 (인)

공공기관인  
공공기관인  
공공기관인  
공공기관인  
공공기관인

# 도 양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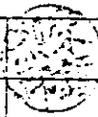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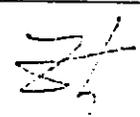
우 212-050 / 강원 평창군 도암면 황계1리 335-1 / 전화 32-530173 / 담당 김경애

문서번호 도암10200-

시행일자 1996. 4. 19.

발급 농부협채

합계

취	금		면 장
부	증		
부	면 장		
만	드	이	김 경 애
		총무계장	협 조

지 목 용산1 (솔봉) 농촌마을길 포장공사 시행결의

용산1 (솔봉) 농촌마을길 포장공사를 다음과같이 시행 결의합니다.

1. 공사명 : 용산1 (솔봉) 농촌마을길 포장공사
2. 위치 : 용산 1
3. 공사금액 : 금 51,300,000원 (₩오천일백삼십만원정)
  - 공사비 - 금 26,270,000원
  - 관급자재대 - 금 25,030,000원
4. 공사개요 : 콘크리트포장 : L=600m, B=4.0m, T=0.2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6. 시행방법 : 도급시행
7. 예산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회진흥, 시도비보조사업  
401-04. 끝.

## 질의 · 답변서

질 의	우 강 호 위원	답 변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회 의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감사특위 ( '96. 11. 25)		
<p>〈질의요지〉</p> <p style="text-align: center;">- 중국홍콩강성 안달시 대표단 방문에 따른 교류의향서 사본제출</p>			

〈답 변〉

- 별 첨 -

중국흑룡강성 안달시와 한국강원도 평창군의

## 자매결연 관계수립에 관한 의향서

중국 흑룡강성 안달시와 한국 강원도 평창군은 쌍방의 발전과 두 시·군간의 친선왕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관계를 수립 하는데 대한 의향에 동의 하였다.

- 一.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신임하는 기초위에 쌍방은 행정, 경제, 문화와 과학기술등 방면의 교류와 협작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一. 쌍방은 부정기적으로 상호방문하며, 관계사항에 대하여 교류를 진행 함으로써, 두 시군의 행정 및 각 계층간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한다.
- 一. 안달시인민정부는 김용욱군수를 단장으로하는 평창군 대표단을 편리 할때 상호간의 이해를 한층더 심화할 수 있도록 안달시로 방문할 것을 초청하며, 김용욱군수는 이를 흔쾌히 접수하였다.
- 一. 본 의향서는 한글과 중국문 두가지 문자로 작성되었으며, 각 2 부로 되어있다.

본 의향서는 쌍방이 각기 한부씩 보존하며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

1996년 11월 12일

金 容 郁

김 용 욱

대한민국 평창군수

刘 润 华

유 춘 화

중화인민공화국  
안달시특별고문

## 질의 · 답변서

질 의	우 강 호    위 원	답 변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회 의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감사특위 ( '96. 11. 25)		
<p>〈질의요지〉</p> <p style="text-align: center;">- '96년 3/4분기 주요사업추진중 1억이상되는 소교량 가설사업 현황은?</p>			

〈답 변 〉

- 별 첨 -

## '96소교량가설공사추진현황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m)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추진상황	도급자	진도 (%)
계	8개소		683,000				
마지1리 소교 량	평창읍 마지1리	L=15.0 B=4.0	60,000	'96.6.20 ~ 9.10	완 공	화 신 건 설	100
종부3리 소교 량	평창읍 종부3리	L=5.0 B=4.0	13,000	'96.8.11 ~ 9.20	완 공	선 건 우 설	100
하일리 소교 량(상판)	평창읍 하일리	상판 2 경간 L=18 B=3.5	20,000	'96.7.10 ~ 9.20	완 공	우 건 성 업	100
용산2리 소교 량 재가설	도암면 용산2리	교량 L=7.0 B=4.0 옹벽 H=2.5 L=18	20,000	'96.10.5 ~ 11.13	부대공 시공	대 현 건 설	90
횡계 의제교 재가설	도암면 횡계2리	교량40 옹벽66 CON'C 포장 A=16.75m'	220,000	'96.7.19 ~ 10.16	완 공	오성중 합건설	100
대화7리 소교 량재가설	대화면 대화7리	L=40.0 B=6.5 돌망태 A=240m'	200,000	'96.5.29 ~ 11.24	부대공 시공	대왕토 건(주)	95
용전교재가설	용평면 용전리	L=7.0 B=5.0 포장 L=90m'	60,000	'96.10.10 ~ 12.8	부대공 시공	석 청 건 설	90
진조교재가설	봉평면 진조리	L=15 B=5.0	90,000	'96.10.15 ~ 12.30	상 판 동바리 시 공	동 개 서 발	60